

9. 駐車場法施行規中 則改正令(案) 立法豫告

1990年 9月 29日

1. 개정배경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주차시설의 증설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교통장애를 야기하고 거리질서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위하여 주차장법 및 동시행령을 개정하였는 바 동법령에서 위 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현행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차장의 주차구획 조정

현행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5미터 이상 길이 5.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폭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함.

나. 주차장의 차로폭 조정

현행 주차장의 차로폭은 직각주차인 경우 7.6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6.5미터 이상으로 축소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토지이용도를 제고토록 함.

다.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민영노외주차장에는 관리소, 휴게소, 공중변소 등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익성 향상에 따른 주차장 설치촉진을 위하여 총 시설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간이매점 및 자동차장식품 판매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주차장설비기준 완화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차로를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하

며,

-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마.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비용 납부 기준면적 하향조정

입지여건상 당해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고 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재는 주차대수 1대당 대지면적 24m²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8m²로 하고 단독주택 등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는 11.5m²로 완화조정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음.

* 주차장법개정법률은 1990년 4월 7일자 관보, 동시행령은 1990년 8월 8일자 관보를 참조하시기 바람.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참 고

외 국 비 교

○ 주차구획 비교

(단위: 미터)

규 격	가 로	세 로	차 로 폭 (직각주차)	구획면적	
한 국	현 행	2.5	5.5	7.6	13.75
	개정안	2.3	5.0	6.5	11.5
런 던	2.3	4.8	6.0	11.04	
파 리	2.3	5.0	5.0	11.5	
홍 콩	2.3	5.0	6.0	11.5	

○ 차로폭 비교

(단위: 미터)

주 차 방 식	현 행		개 정 (안)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평 행 주 차	3.5	5.5	3.3	5.0
직 각 주 차	7.6	7.6	6.5	6.5
60° 대향주차	6.4	6.4	5.0	6.0
45° 대향주차	3.8	5.5	3.5	5.0
교 차 주 차	3.8	5.5	3.5	5.0

○ 외 국 예

(단위: 미터)

주 차 방 식	일 본	영 국	독 일	미 국	비 교
평 행 주 차	3.5	3.05	3.5	3.05	출입구 2개
직 각 주 차	5.0~5.7	6.1	6.0	6.1	
60° 주 차	4.5~5.6	4.27	4.5	5.5	
45° 주 차	3.8	3.05	3.5	3.4	출입구 2개